

3. 「駐車場法改正案」立法豫告

資料提供：建設交通部 陸上交通局

- 건설교통부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주차난 완화와 교통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차장법을 개정키로 하고 '95. 9. 30. 주차장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.

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가.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 적용되던 주차장법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·준도시지역 및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여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의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.

나. 지금까지는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이상의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(하한제)하고 있으나,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이 잘 정비된 도심지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를 일정기준 이하로 제한(상한제)할 수 있도록 함.

(다만, 주거지역 주차장, 지하철 환승주차장 등은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도록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)

다.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제작자 등에게 안전도검사 및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, 소유자등에게 사용검사,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의무화함.

라.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를 의무화하고, 동의무 위반시에는 대집행등을 할 수 있도록 함.

마.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허가제를 실시하는 주거지역 이면도로상의 노상주차장에서 무허가주차를 하거나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한 차량은 불법주차에 준하여 견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.